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번호	제454호
의결년월일	2001. 3. 14 (제85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3. 13

제 출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주 문

○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별첨과 같이 제안한다.

□ 제안사유

○ 지난 2000년 11월 10일 부천시의회규칙 제7호로 공포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○ 자문위원에게 1일 80,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회계예규(학술연구용역계약시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연구비단가)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, 1일 지급액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/25 이하로 함(안 제5조)

□ 개정규칙안 : 별 첨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□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부천시의회 규칙 제 호

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

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3항 중 단서규정을 삭제한다.

①의장은 의원이 과제 연구(검토)를 신청한 때에는 의정자문위원(이하 "자문위원"이라 한다)에게 연구(검토) 지시를 하여야 하며, 자문위원이 제출한 연구(검토)결과에 대하여 연구승인을 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 중 "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정액표"를 "공무원여비규정 제3조의 여비지급구분표"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.

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.

1. 회계예규(학술연구용역계약시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연구비단가)의 책임연구원 기준을 따른다.

2. 1일 지급 기준액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/25 이하로 한다.

별표 1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운영) ①의장은 연구과제를 부여 또는 검토시키거나 의정자문위원(이하 "자문위원"이라 한	제2조(운영) ①의장은 의원이 과제 연구(검토)를 신청한 때에는 의정자문위원(이하 "자문위원"이

다)이 스스로 발의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(검토)지시 또는 연구승인을 하여야 한다.	라 한다)에게 연구(검토)지시를 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이 제출한 연구(검토)결과에 대하여 연구승인을 하여야 한다.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
③부천시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연구(검토)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문 등 하루에 종료되는 과업의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③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(삭제)
제5조(수당 등)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에게는 1일 80,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.	제5조(수당 등)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. 1. 회계예규(학술연구용역계약시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연구비단가)의 책임연구원 기준을 따른다. 2. 1일 지급 기준액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/25 이하로 한다.
②자문위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정액표 제3호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②·····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의 여비지급기준표····· ·····
③(생략)	③(현행과 같음)
④자문위원에 대한 근무일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	④(삭제)